

어차피!
3-4명 외기 있다.
처지 성관계 되었다. 가해자도 있었을지.
이런 거지 아니겠어.
성폭력이란...?

反성폭력 교양 자료

성폭력이란 단순히 강간이나 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이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성희롱 - 성추행 - 강간미수 - 강간과도 같은 남성성기 중심의 도식적인 성폭력 구분은 피해자에게는 무의미하다. 즉 강간은 매우 나쁜 범죄이고 언어적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있다. 하지만 동의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아니다. 즉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거부하였을 경우 받을 불이익 때문에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친밀한 사이일 경우는 이후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여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 여성의 no를 no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강간을 조금 난폭한 성관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여성의 침묵은 너무나 쉽게 yes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을 동의 여부의 문제로 볼 때 여성이 동의나 거부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 구조 안에서 여성은 성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어려웠다. 창녀/성녀의 이중 성규범 속에서 여성은 성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자신을 성적 욕구를 가진 주체라고 내세울 수 없었던 것이다. 성에 관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규범을 내면화한 상태에서는 동의도 거부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 자리에서 싫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냐고 여성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고 남성에게 묻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다.

성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단순히 '과렴치한 가해자와 거기에 재수 없게 걸린 피해자'로 치환되어 버린다.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도덕성만을 비난하면서 쉽게 자기 자신을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잊지 말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폭력이나 아니냐의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에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많은 경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것이 성폭력이다 아니냐를 판정해줄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음은 '피해자가 제멋대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너무 주관적이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와 같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는 것 아니냐'등의 비난과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쉽게 이야기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성폭력의 처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는 많은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겪게 된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가해자 혹은 가해자 주변 인물들이 협박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2차 가해에 속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위협 외에도 '별 것 아닌 일인데 왜 예민하게 그러느냐' '네가 잘 못한 것은 아니냐' '너의 옷차림이 이상하지 않았느냐'... 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2차 가해에 포함된다.

피해자의 상황 이해하기 →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도와주기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 1)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2) 성폭력은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2.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혹시 내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왜 그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등-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일뿐이다. 성폭력이 일어난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이 피해자의 탓이 절대 아님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멀리하고 싶어 하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비밀비재하기 때문에 선배나 동기가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피해자이다. '그런 일은 별 거 아니지 않아?', '뭘 신고까지 하니?'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4. 사건이 신고 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6.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준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 성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왜 성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2. 성폭력 사건이 신고 됐을 경우 최대한 친분이 있는 동성의 선배나 동기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라는 것은 꼭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신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어떤 경우든지 사건을 해결하기로 맡은 사람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최선이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 사이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넘어가자' 등의 말로 사건을 덮어 두자고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된다. 그런 식의 해결은 해결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 또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4. 사건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순서(학회나 동아리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주로 비상대책위원회(준)의 이름이 된다- 을 꾸린다. 학회장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꾸리는 것이 좋다. 이 때 가해자의 대리인이 들어온다면 가해자를 두둔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사건 해결에서 그 후속작업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② 피해자에게 대책위가 어떤 구성원으로 꾸려지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준다. 언제든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③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기록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실 확인이 되면 비대위에서는 사건 규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과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사건 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준)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된다.

⑤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을 받는다.

⑥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⑦ 가해자가 요구사항을 시행하는지 비대위는 책임 있게 확인한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에 연락을 할 수 있다.

5. 한편 과/반학생회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사실 그 피해자가 완전히 보호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경우라도 학우들과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가능하다.

사건이 해결이 된 이후 사건 해결 과정을 그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기본(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나 간단한 세미나, 관련 영상물 보기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성원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잠재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후의 성폭력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건 해결을 할 때 피해자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줘야 하고, 최대한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신고하고 나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세워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공식적 해결은 공개적 해결과는 다르다)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 절대 사건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 사건이 묻혀지거나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가해를 할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뒷소문만 무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신여공에게

대란 이야기